

수입사료 사후관리 회원사 실무자 교육

본회 기획팀 홍성수 과장

정부(농림부)에서는 지난 3월 7일 사료관리법 및 관련 고시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“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”을 개정·고시한 바 본회에서는 회원공장의 원활한 사후관리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담당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이에 본지(本誌)에서는 사후관리 교육내용을 요약 게재하여 관련된 독자들의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. – 편집자 주

- 교육기간 : 2007. 3.20(1일간) 14:00~16:00
- 교육장소 : 사료 협회 대회의실
- 참석인원 : 61명(47개 회원공장)
- 교육주관 : 사료 협회 기획팀
- 교육내용

1. 정부(농림부)의『수입사료사후관리요령』개정사항 설명

가. 개정경위

- 농림부 입안예고(2006.10.20)
- 회원사 의견조회(2006.10.25)
- 농림부에 협회의견 제출(2006.11.15)
- 수입추천기관 및 농림부 실무자 협의(2006.12~2007.1)
- 농림부와 관세청과의 협의(2007.2~3)
- 개정고시(2007.3.7)
- 시행(2007.4.1)

나. 개정내용

■ 사후관리(수탁)기관의 변경(동 고시 제3조)

- 기준: 시·도지사
- 변경: 수입추천기관(사료협회, 농협, 단미협, 대용유협, 대두가공협)

■ 사후관리의 현지 확인 강화(동 고시 제12조)

- 관세법상 대상물품의 15%이상 현지실사 규정 반영

■ 동일용도 소비대차 근기조항 마련(동 고시 제10조의2)

■ 배합사료 생산실적 집계항목에 어류·실험·애완동물사료를 추가 (동 고시 제9조 제1항 및 별지서식 제5호)

■ 사후관리 대장 등 관련서식의 변경(동 고시 별지서식 제1호~제4호)

■ 기타

- 사후관리 대상자 중 섬유·질사료(가공, 밀효, 반추동물용배합사료) 제조업자 제외
(동 고시 제4조)

- 사후관리 관련 보고(월말보고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·실적 보고) 기한 연장
(익월 10일까지 연장) (동 고시 제7조 및 제9조 제1항)

-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·실적 보고시 농림부 Agrix시스템 보고에 갈음
(동 고시 제9조 제3항)

- 실수요자에 공급하는 타용도 전용·우려품목에 “콩” 추가
(동 고시 제5조의2 제2항)

- 수입신고(통관) 후 용도 세율 적용품목의 용도변경승인신청은 농림부 장관 및 관할지
세관장에 동시 신고(동 고시 제10조)

※ 수입사료사후관리 요령 중 개정(농림부고시 제2007-11호)는 사료협회 홈페이지
(www.kofeed.org) 정보도서관-관련법규-34호에 수록하였음.

다. 사료협회의 사후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회원공장 실무진 보고요령

① 사후관리 대상품목 확인(반기별)

- 2007년 상반기 할당관세 품목: 옥수수, 겉보리, 타피오카, 균채류 등, 대두박
- 시장접근률량 양허관세 품목: 옥수수, 겉보리, 타피오카, 균채류 등, 참깨유박

※ 균채류 등의 경우 2308류(콘糗, 대두피, 옥대펠렛, 사과박 등)만 해당

② 사후관리 대상품목의 수입·공급 및 사용·내역(별지 제1호 서식, 舊 사후관리대장) 작성

- 모선별로 1장씩 작성(1장 내에 모선별 구분 가능하나 일자별 사용량 및 채고량이 1장 내에 표

시되어야 함)

- 소비대차 차용 · 회수 시 前 단계(추천, 통관, 감량)는 생략 가능하나 대여 · 차용 공장명을 반드시 명기할 것
- 인수재고 및 총재고가 0가 될 때까지 작성
- 대장 form은 엑셀 또는 한글양식 모두 가능하나 출력물(현지실사시 사후·관리기관의 확인 대상)은 363mm × 256mm(일반용지, A3)를 지켜야 함.
- ※ 대장 작성 시점은 4.1일 추천 및 통관(3월 前 추천이라도 통관시점이 4.1일 이후면 해당됨)부터 작성
- ※ 대장 form은 사료협회 홈페이지 (www.kofeed.org) 정보도서관-양식및요령-6호에 엑셀양식으로 수록하였음.

③ ()월분 사후관리대상품목의수입 · 공급및사용내역(별지 제1호 서식) 보고

- 매월 말일부로 사후관리 마감집계를 한 후 익월 10일까지 사료협회에 보고
(4월분 마감부터 5.10일 까지 보고 - 3월분은 기준대로 시 · 도지사에 보고)
- 원료 및 모선의 인수재고 및 총재고가 0가 될 때까지 집계 보고
(원료사용실적에 표시되는 사용량 및 재고량과 반드시 일치(一致)하여야 함.)
- 양식은 엑셀/한글/Word 모두 가능하며 규격(460mm × 286mm)外 보고가능
- 보고방식은 Fax 및 E-mail 모두 가능
(Fax : 02-3471-8429, E-mail : afterfeed@kofeed.org)

④ 자가배합사료원료구입 · 공급카드(별지 서식 제3호)는 전용우려품목(옥수수, 콩, 보리 등 동 친드 内 “품목별1일소요량”의 품목)을 실수요자(농가, TMR공장 등)에 공급할 경우 작성 · 비치(현지 실사 때 확인대상)

⑤ ()월분 ()사료생산실적(별지 제5호) 및 ()월분 사료사용실적(별지 제6호)의 경우 종전대로 농림부통합정보시스템(Agrix)에 입력 및 보고

(동 보고 시 Fax : 02-587-2911, E-mail : research@kofeed.org)

※ 어류 · 실험 · 애완동물용 사료 생산실적 및 원료사용실적이 추가됨.

※ 따라서 옥수수 등 사용원료가 어류 등 사료의 사용실적에 포함되는 경우, 사후·관리 보고시 사용량은 양축용+어류 등 사료의 원료사용량이 되어야 함.

라. 수입원료의 용도변경 및 소비대차 안내

■ 용도변경 방식 변경(수입사료사후관리 요령 제10조 개정)

- 개정전 : 수입신고 前 · 後에 관계없이 수입추천기관(사료협회)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 신청 후 승인을 得
→ 동 승인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정정 · 차액관세 납부 등 통관업무 진행
- 개정후
 - ▶ 수입신고 前 용도변경 : 사후관리기관(사료협회)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 신청 후 승인을 得
→ 세관에는 세번변경(비료용 등) 후 통관업무 진행
 - ▶ 수입신고 後 용도변경 : ① 사후관리기관을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 신청 후 승인을 得
② 세관에 용도외사용 승인신청 후 승인을 得한 후 통관업무 진행
- ※ 세관에 용도외 사용신청 시 작성할 양식
: 용도외사용(양수도 · 임대) 승인신청(승인)서
(관세청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지 제2호)

■ 소비대차 승인신청 변경

- 개정 前 : 할당 및 양허관세 적용품목(6개품목) 및 소맥, 완두(용도세율적용품목) 모두 시 · 도 지사(수입추천기관 경유)의 승인을 得
- 개정 後 : ① 할당 및 양허관세 적용품목(6개품목)은 사후관리기관(사료협회)에 승인을 得
② 소맥, 완두(용도세율적용품목)는 세관에 직접 승인을 得
→ 세관의 “용도외사용(양수도 · 임대) 승인신청(승인)서”를 작성하여
소비대차 승인 신청
- ※ 주의사항 : 특히 세관의 소비 대차 승인신청(처리기간 4일)의 경우 승인신청을
得한 후 소비대차를 실시
- 구분 승인신청 이유
 - 농림부 사후관리대상 품목(추천품목) 및 관세청 사후관리대상 품목 불일치
 - 사후관리 수탁기관이 수입추천기관으로 되어 있어 동 추천기관은 非추천품목인 소맥, 완두(용도세율 적용품목)의 사후관리 권한이 없음.